

사회복지법인다솔 남부실버요양센터 운영규정 내

제 8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 47조 【계약목적】

1.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와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 48조 【계약기간】

1. 장기요양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인정서의 갱신에 따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2. 계약 기간 내에 장기요양수급자의 변경, 장기요양인정 등급 또는 본인부담금 감경여부의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재계약 없이 변경사항을 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며 계약 내용 변경을 갈음한다.

제 49조 【계약내용】

1. 입소자와 보호자, 그리고 시설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한다.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1부는 시설에서 보관한다.
 - ① 계약 당사자
 - ② 계약 기간
 -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 및 비용 등
 - ④ 비급여 대상과 항목별 비용
2.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입소자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는다.

제 50조 【입소비용 및 기타 부담액】

1. 입소비용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2. 입소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계산한다. 입소비용 산정액은 【별표6】와 같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비급여비용으로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 ① 식재료비
 - ② 개인 약제비 및 의료비
 - ③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4.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5. 월 입소비용은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6.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7. 입소비용 관련 정보는 공단 또는 시설 홈페이지 및 기관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 51조 【비용의 청구】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이용비용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3.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해당 연도수가를 적용한다.

제 52조 【비용의 변경】 2023.06.29.<삭제>

제 5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① 시설의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③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식사·생활상담·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⑤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⑥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⑦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⑧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⑨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⑩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수급자 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 ⑤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 54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일상생활기록지, 상담기록, 경위서 등)를 첨부한다.

1.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3.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5.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 55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입소자는 시설이 제공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 시설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9장 입소비용 등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 56조 【입소비용 등 변경방법】

1.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지체없이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2.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 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 ① 장기요양수급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② 장기요양수급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 ④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가 변경되었을 경우
4.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즉시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입소비용 등 비용에 대한 변경은 시설장 또는 운영위원회 등의 요청에 의하여 발의되며, 운영위원회에서 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7조 【입소비용 변경 절차】 2023.06.29.<삭제>

제 10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제 58조 【서비스 및 프로그램】

1. 시설에서는 장기요양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보호하면서 제공하는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포함하여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공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① 일상보호 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청결, 몸단장, 머리감기,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치매문제행동대처 등
- ② 보건·의료서비스(계약의 협약, 수급자 투약관리 등 적절한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 ③ 사회적응서비스
- ④ 가족연계 및 지역복지 서비스
- ⑤ 일상생활지원 관련 서비스
- ⑥ 신체·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 여가지원을 위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
- ⑦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등을 예방하고 시설 내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화재발생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매뉴얼을 구비하고 정기적인 직원교육 실시
- ⑧ 수급자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막기 위하여 식품 등에 대한 위생관리 및 소독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